

주택정비사업 주민총회 사전자문제 시행 안내문

재개발, 재건축 등 주택사업 조합(추진위원회)의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개최시 토지등소유자간 분쟁을 사전방지하고, 후속 인가 과정에서의 보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“총회 사전자문제”를 시행하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자문대상 안건

- 정관(운영규정) 변경
- 임원 선출·변경 관련
- 사업시행계획(건축계획, 정비기반시설 등) 수립 및 변경
- 관리처분계획(분양계획, 조합원 부담규모 등) 수립 및 변경

방 법

- 주민(조합)총회 개최 예정일 40일전에 사전자문을 신청합니다.
- 구에서는 총회개최기한을 감안하여 10일 이내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

기대효과

- 어려운 법령 및 모호한 총회안건에 대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.
- 누락될 수 있는 의결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주민의 번거로움 및 추가비용 발생을 제거하고자 합니다.



서울특별시 성동구청

[건축과·주택과]